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8
------	------

제출년월일: 2003. 7. 16.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고성군세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추정규정 삭제(안 제2조 제2항)
-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정규정 삭제(안 제3조 제1항)
-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자구수정(안 제6조)
-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자구수정(안 제9조 제2항)
- 마.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안 제10조 제2항)
- 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추가(안 제12조 제1항)
- 사.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안 제16조 제1항, 제2항)
- 아.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법규 명칭변경(안 제17조)
- 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5조 제1항)

3. 참고사항

- 관련공문 : 도 세정 13400 - 11523호(2002.12.6)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 제2002-511호(2002. 12. 11~12. 31),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을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
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삭제></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삭제></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시설</u>----- ----- <u>노인복지시설</u>----- ----- -----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u>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u></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u>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 ----- ----- ----- -----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③ (생략)</p>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에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 <u>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u>----- ----- ----- -----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u>----- -----<u>동법 제30조</u> <u>및 제32조</u>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 ----- ----- ----- ----- ----- -----</p> <p>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u> -----<u>동법 제32조</u>----- ----- ----- ----- ----- -----</p>

